

가정통신문

(2024.03.06.)



2024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 댁내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본교 규정에 따른 2024학년도 출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참가, 훈련참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등'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8세·시배 ᆾ 그러 배우시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 8)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단 지각, 조퇴, 결과 상관없이 1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2. 질병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으로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학급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학기당 1회)

3.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의 출석 정지 기간
- 5)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 6)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의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5.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생리인정 학부모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교육활동/각종서식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3. 03. 06.

정 명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